

##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       |       |     |     |     |                |
|-------|-------|-----|-----|-----|----------------|
| 담당 부서 | 법령정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희 | (044-200-6571) |
|       |       | 담당자 | 서기관 | 남수진 | (044-200-6572) |

| 연번 | 정비 대상 법률                       | 업종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
| 1  | 법무사법                           | 법무사업                     | • 30일 이상<br>휴업시<br>휴업신고 | 법무부     |
| 2  | 변호사법                           | 변호사업                     |                         |         |
| 3  | 외국법자문사법                        | 외국법자문사업                  |                         |         |
| 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br>관한 법률            | 상시계측관리업                  |                         | 행정안전부   |
| 5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제조·수입업,<br>승강기 유지관리업 |                         |         |
| 6  |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                         |         |
| 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br>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활동계획<br>수립 대행업       |                         |         |
| 8  | 인삼산업법                          | 인삼류제조업                   |                         | 농림축산식품부 |
| 9  | 산림기술 진흥 및<br>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용역업                  |                         | 산림청     |
| 1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 |
| 1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br>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폐자동차재활용업,<br>폐가스류처리업     |                         | 환경부     |
| 12 | 환경오염시설의<br>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허가대행업                  |                         |         |
| 13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br>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사업                   |                         | 해양수산부   |
| 14 | 어장관리법                          | 어장정화·정비업                 |                         |         |
| 15 | 항로표지법                          | 위탁관리업                    |                         |         |
| 16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사업                   | • 15일 이상<br>휴업시<br>휴업신고 | 해양경찰청   |